

# 안 내 문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활용할만한 정부지원금 안내>

- ◆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입니다. 현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정부지원금(장려금)**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세요.

### □ 고용촉진장려금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곤란한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해주는 장려금입니다.

#### ○ 지원대상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모두 가능

- \* 지원제외 사업주: ①장애인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②공공기관 및 공기업, ③유흥·주점, 기타 사행업 사업주, ④임금체불명단공개 사업주, ⑤고용조정제한 의무 위반 사업주, ⑥지원대상 근로자의 이전 사업주와 동일·관련 사업주, ⑦산업재해명단공표 사업주, ⑧근로자 고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최초 장려금 미신청 사업주
- \* 지원제외 근로자: ①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②월평균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 ③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④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⑤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다만,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자>는 가능), ⑥고용보험 미가입자, ⑦구직등록요건 미충족자, ⑧사업자등록한 자

#### ○ 지원요건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 \* 취업지원프로그램 종류: 붙임 참조
-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여성실업자, 섬 지역 거주자
- \* 구직등록 기관: 고용센터(Work-Net)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 ○ 지원수준은?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60만원씩 1년간 지원

- \* 지원기간: 1년 범위 내 6개월 단위 지원(다만, 여성가장·중증장애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년간 지원)
- \* 지원한도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최소 3명 ~ 최대 30명)

#### ○ 신청방법은?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6개월마다 신청

<붙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연 번	취업지원프로그램 (주관부처 및 운영기관)	이수한 사람의 범위
1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I 유형 중 청년 특례유형에 속하는 자로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의 60을 초과하는 사람 및 II 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로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동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 - 단,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I 유형의 청년 특례유형 및 II 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로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동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로 봄. - 단,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만 40세 미만 이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단, 2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3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4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를 마친 사람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원 직업훈련 프로그램」 (법무부)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에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수료한 사람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정규훈련, 맞춤형훈련)」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형훈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 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형훈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 단,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 구직 등록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공공훈련기관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연 번	취업지원프로그램 (주관부처 및 운영기관)	이수한 사람의 범위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 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9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 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에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참여한 사람
10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 하는 「기본교육」과 제대 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및 제대 군인지원센터가 운영 하는 「직업교육훈련」 (국방부, 국가보훈처)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을 마치고,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을 마친 사람으로서 구직등록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직업교육훈련(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1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 그램(재도약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가구 구성원)이하인 사람. -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12	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기관의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고용노동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으로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을 마친 사람
14	고용위기지역 이직자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에서 고용 위기지역 지정일 1년 전부터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별첨3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5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자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지정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별첨3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6	40대 일자리 지원프로그램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다음 40대 일자리 지원대책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LH 소머터 프로그램’ 및 ‘버스운전인력양성지원 프로그램’ (2)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현장밀착형 직업훈련 지원프로그램’(자동차 부품 공장자동화제어 인력양성, 자동차부품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40대 중장년 뿌리산업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17	청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2~3개월) 프로그램 제공
18	찾아가는 아프간인 대상 맞춤형 사회통합 프로그램 (법무부)	법무부가 2021년 9월 24일부터 2022년 2월 11일까지 운영하는 ‘찾아가는 아프간인 대상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취업프로그램을 마친 아프간 특별기여자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까지 이수사실이 유효

## □ 고령자 고용지원금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곤란한 고령자를 60세 이상까지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해주는 장려금입니다.

- **지원대상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
  - \*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정보마당(www.mme.or.kr)에서 확인
  - \* 지원제외 사업주: ①공공기관 및 공기업, ②유흥·주점, 기타 사행업 사업주, ③임금 체불명단공개 사업주, ④산업재해명단공표 사업주, ⑤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 \* 지원제외 근로자: ①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자> 제외), ③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 ④고용보험 미가입자
- **지원요건은?** 사업 가동기간이 1년 이상이고, 만 60세 이상 월평균 고령자 수가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 \* (고령자수) 1년 초과하여 근무 중인 만 60세 이상 재직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하는 만 60세 이상 신규 채용자( '23.6.30.까지 신규 채용한 자에 한하여 적용)
- **지원수준은?** 증가한 고령자 1인당 분기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 \* 지원한도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최소 3명)
- **신청방법은?** 최초(1회차) 신청의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고용노동부 누리집 참조)에 따른 신청서 접수기간('23년 1분기는 '23. 4. 1.부터 '23. 4. 30.까지) 동안 신청
  - 2회차부터는 신청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마다 신청(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
- \* 1분기 4.1., 2분기 7.1., 3분기 10.1., 4분기 다음연도 1.1.

##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정년퇴직을 앞둔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해주는 장려금입니다.

### ○ 지원대상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
- \*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정보마당(www.mme.or.kr)에서 확인
- \* 지원제외 사업주: ①공공기관 및 공기업, ②유흥·주점, 기타 사행업 사업주, ③임금 체불명단공개 사업주, ④산업재해명단공표 사업주, ⑤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⑥ 60세 이상 피보험자수가 전체 피보험자수의 30%를 초과하는 사업주
- \* 지원제외 근로자: ①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자> 제외), ③월평균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 ④고용보험 미가입자

### ○ 지원요건은? 이미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 중 어느 하나를 도입하였으며,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계속고용제도를 적용받아 고용연장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 \* (계속고용제도) ①정년연장(1년 이상) ②정년폐지 ③재고용(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6개월 이내 재고용,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 ○ 지원수준은? 정년에 도달하였으나, 계속고용제도로 고용이 연장된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 \* 지원한도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최소 3명 ~ 최대 30명)

### ○ 신청방법은?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마다 신청(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

- \* 1분기 4.1., 2분기 7.1., 3분기 10.1., 4분기 다음연도 1.1.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해주는 장려금입니다.

- **지원대상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중 5인 이상(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
  -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
  - \*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 지원제외 기업: ①공공기관 및 공기업, ②유흥·주점, 기타 사행업 등 소비·향락업종, ③임금체불명단공개 사업주, ⑤산업재해명단공표 기업, ⑥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⑦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참여 후 부정청구 처분을 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주 등
  - \* 지원제외 근로자: ①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자> 제외), ③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근로자, ④고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⑤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형태로 고용된 자, ⑥고용보험 미가입자
- **지원요건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피보험자수 1인당 1,800만원 이상<1년 미만 신설 기업은 제외>) 등을 충족한 경우
  -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 청년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6개월 이상 실업 ▲ 고졸 이하 학력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 자립지원필요 청년 ▲ 북한이탈청년 ▲ 폐자영업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졸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 제외) 등
- **지원수준은?** 신규 고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 지원한도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비수도권지역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 **신청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시군구별)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1주당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게 한 사업주를 지원해주는 장려금입니다.

### ○ 지원대상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
- \*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정보마당(www.mme.or.kr)에서 확인
- \* 지원제외 사업주: ①공공기관 및 공기업, ②유흥·주점, 기타 사행업 사업주, ③임금 체불명단공개 사업주, ④산업재해명단공표 사업주
- \* 지원제외 근로자: ①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자> 제외), ③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 ④고용보험 미가입자

### ○ 지원요건은?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가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특별한 사유의 제한은 없음)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한 경우

- \*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운영이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등에 반영 필요
-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시간 단축 이후에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이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 활용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함
- \* 출퇴근관리는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하여야 함(출퇴근기록 누락일수가 월 3일 초과 또는 연장근로가 월 10시간 초과 → 해당 월 장려금 부지급)
- \*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 지원수준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

- \* 지원한도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최소 3명 ~ 최대 30명)

### ○ 신청방법은?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마다 신청(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

□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금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선택근무제	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사무실 등에서 수행할 일을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사무실 등에서 수행할 일을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외부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제도

○ 지원대상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
- \*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정보마당(www.mme.or.kr)에서 확인
- \* 지원제외 사업주: ①공공기관 및 공기업, ②유흥·주점, 기타 사행업 사업주, ③임금 체불명단공개 사업주, ④산업재해명단공표 사업주
- \* 지원제외 근로자: ①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자> 제외), ③임금이 최저 임금 미만인 근로자, ④고용보험 미가입자

○ 지원요건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

- \* 유연근무제도 도입·운영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선택근무제 한함) 등에 규정
- \*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이어야 함
- \* 출퇴근관리는 지문인식, 전자카드,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하여야 함
- \* (선택근무제) 해당 월의 정산기간을 평균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비교하여, 2시간 이상 단축한 일수가 4일 이상 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30분 이상 단축한 일수가 8일 이상 발생

○ 지원수준은? 활용근로자 1인당 정액으로 최대 1년간 360만원 지원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액
	15만원 (월 6일~11일 활용)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재택·원격근무제	15만원 (월 6일~11일 활용)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360만원 (1년간)
선택근무제	30만원 (월 2시간 이상 단축 4일 이상 또는 30분 이상 단축 8일 이상)		360만원 (1년간)

- \* 지원한도는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최소 3명 ~ 최대 70명)

○ 신청방법은? 유연근무를 사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마다 신청(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

□ **사회서비스 선도모델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신노년세대의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 등 ESG 분야(환경, 안전, 복지서비스 등)의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고, 노인 일자리를 개발·창출하는 사업모델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E (환경, 에너지 등), S (돌봄, 안전 등), G (경영, 자문 등)

○ **지원대상은?** 사회서비스 등 ESG 분야(환경, 안전, 복지서비스 등)의 사회적 현안을 해소하는 노인일자리 제공 기업

\* 지원제외 : 타 정부부처 재정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사업장

○ **지원요건은?**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사회적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직종에 만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법인 및 단체로서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사업에 선정된 경우

○ **지원수준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2만원씩, 1년간 최대 5개월간 160만원까지 지원

\* (근로조건) 월 60시간 및 5개월 이상 근로계약, 월 72만원 이상 급여 수령

○ **신청방법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문의

* (서울제주지역본부)	(서울) 02-6954-2061	(제주) 064-805-3077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부산울산) 051-507-6374	(경남) 070-4372-3034
(대구경북강원지역본부)	(대구경북) 070-7862-1262	(강원) 033-910-3059
(경기인천지역본부)	(경기) 070-4861-6502	(인천) 070-8858-8907
(호남지역본부)	(광주전남) 062-714-1292	(전북) 063-251-0215
(중부지역본부)	(대전충남) 042-719-1383	(세종충북) 043-715-3045

## <고령자 특화 취업지원기관, 고령자인재은행 안내>

◆ 고령자인재은행은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에게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및 상용·일용직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고용노동부 지정 고령자 취업지원 기관입니다. 가사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려는 경우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고령자인재은행

만 5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상용직 일자리 정보 제공, 취업알선 및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 **지원대상은?** 만 50세 이상 구직자
- **지원내용은?**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1:1 상담-직무교육·훈련-취업알선」 등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운영
- \*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개별상담(선발) → 취업의욕 고취 및 직무교육(1개월 또는 50시간 이상) → 취업동아리 → 집중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 ↳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을 이수한 구직자는 ‘고용촉진장려금’ 의 대상이 됨

### 고령자인재은행 운영현황 <'23년 현재 40개소>

서울	서울중부 고령자인재은행	02-719-6054	부산	부산진 고령자인재은행	051-807-7954
	서울서부 고령자인재은행	02-2607-9926		동래 고령자인재은행	051-503-8944
	북부종합 고령자인재은행	02-3391-2217		해운대 고령자인재은행	051-702-9198
	생명의전화 고령자인재은행	02-916-9190		실버벨 고령자인재은행	051-337-5959
	서울북부 고령자인재은행	02-3399-7637		경남 고령자인재은행	055-261-8523
경기	의정부 고령자인재은행	031-853-6340	울산 경남	울산 고령자인재은행	052-944-3523
	남양주 고령자인재은행	031-577-7762		양산 고령자인재은행	055-362-9192
	수원 고령자인재은행	031-252-5111		진주 고령자인재은행	055-755-3463
	평택 고령자인재은행	031-651-7797		달구벌 고령자인재은행	053-285-1331
강원	춘천 고령자인재은행	033-254-4878	대구 경북	포항 고령자인재은행	054-274-4445
	강릉 고령자인재은행	033-651-1385		영주 고령자인재은행	054-639-0550
	속초 고령자인재은행	033-635-3524		안동 고령자인재은행	054-858-8219
	원주 고령자인재은행	033-742-6090		세종 고령자인재은행	044-862-0874
광주	광주 고령자인재은행	062-674-1055	세종 충북 충남	천안 고령자인재은행	041-578-5863
	노동실업광주 고령자인재은행	062-225-4139		충주 고령자인재은행	043-842-1929
전북	전주YWCA	063-224-5501	전남	제천 고령자인재은행	043-646-0085
	원광효도마을 고령자인재은행	063-833-0334		목포 고령자인재은행	061-242-1611
	익산 고령자인재은행	063-857-8911		순천 고령자인재은행	061-744-9004
제주	군산 고령자인재은행	063-446-7577	제주	여수 고령자인재은행	061-681-0911
	제주 고령자인재은행	064-805-0060		서귀포 고령자인재은행	064-762-1407

## <가사근로자가 활용할만한 훈련사업 안내>

- ◆ 현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가사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을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을 소속 가사근로자 분들께 전달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 국민내일배움카드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고, 국민 스스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훈련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은?**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특히 재직자는 발급절차 용이)
  - \* 지원제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고소득 자영업자, 만 75세 이상, 월평균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지원요건은?** 고용노동부가 심사평가를 통해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인정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의 “훈련과정-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에서 ‘청소’, ‘세탁’, ‘아이돌봄’ 등 키워드로 구체적인 훈련과정 검색 가능
  - \* ①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고용센터 또는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농협카드 또는 신한카드 중 선택) → ②신용 또는 체크카드 발급 → ③수강 희망하는 훈련과정 신청 → ④국가에서 지원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훈련비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
- **지원수준은?** 훈련비의 45~85% 지원 (1인당 5년간 300~500만원 한도)
  -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및 II 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 100% 또는 80%,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 지원
  - \* 훈련과정 직종별 평균 취업률, 대상자 소득수준 등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
  - \* 유효기간은 국민내일배움카드(계좌) 발급일부터 5년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은?** ①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과(팀) 방문 또는 ②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회원가입 후 “국민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 이용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훈련

대기업과 협력업체(중소기업) 또는 특정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관련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는 공동훈련 센터를 지원하는 훈련사업입니다.

- **지원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공동훈련센터
- **지원요건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소속 근로자 및 채용예정자를 공동훈련센터(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에서 운영하는 가사서비스 관련 훈련 과정을 수강하게 한 경우

<가사서비스 관련 컨소시엄 훈련과정>

훈련과정	훈련일정	훈련과목
가사서비스 제도 도입에 따른 직무이해	1일차 (8시간)	민원 최소화를 위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작업관련 서류와 보고서 작성실습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계획 및 사전준비
	2일차 (8시간)	가사지원활동의 계획 실습
		가정 내 주요 청소업무 체크리스트
		경력개발 경로 모형을 통한 전문가로 성장하기
		성공 및 실패사례 공유

- **지원수준은?** 사업주위탁훈련비 환급방식 등으로 수료인원에 따라 지급
- **신청방법은?** 훈련과정 수강신청 등은 공동훈련센터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에 문의(02-2088-4705~6) 또는 누리집(www.knesa.or.kr) 참조

□ 플랫폼종사자 특화훈련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 근로권익 보호,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 실시하는 맞춤형 특화훈련 지원사업입니다.

- **지원대상은?** 플랫폼 종사자 또는 플랫폼 종사 희망자  
- 다만,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지원제외 대상\*은 미포함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고소득 자영업자, 만 75세 이상, 월평균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지원요건은?** 고용노동부가 심사평가를 통해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으로 인정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2023년 플랫폼종사자 특화훈련과정 목록>

연번	훈련기관명	훈련과정명	분야	훈련방식
1	맘시터원격평생교육원	아이돌봄 플랫폼 시터교육과정	보육	원격
2, 3		아이돌봄 플랫폼 영아전문가 과정(만0세), (1~2세)	보육	원격
3, 4	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	(플랫폼 종사자) 가사관리종사자 입문과정, 심화과정	가사	집체
5, 6	창원여성인력개발센터	(플랫폼 종사자) 전문 가정관리사 입문과정, 심화과정	가사	집체
7	안산와이더블유씨에이	(플랫폼종사자)가사관리전문가 양성과정	가사	집체
8~10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플랫폼 종사자) 아이돌봄 독서, 미술, 발달 놀이과정	보육	집체
11, 12		(플랫폼 종사자) 가사청소 입문과정, 심화과정	가사	집체
13	광주북구여성인력개발센터	돌봄과 살림돌보미의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교육	가사	집체
14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가정관리사 양성과정	가사	집체
15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	(플랫폼종사자) 가사관리사 양성과정	가사	비대면실시간
16		(플랫폼종사자) 정리수납 종사자 양성과정	가사	비대면실시간
17, 18	생활연구소분당평생교육원	(초급)생활청소 첫걸음 과정, (중급)생활청소 전문가 과정	가사	원격
19		(고급)디테일을 살리는 청소 후 정리 과정	가사	원격
20	자란다원격평생교육원	(플랫폼종사자)아이기질 전문과정	보육	원격
21~24		(플랫폼종사자)영어, 미술, 수학, 한글 놀이 실전과정	보육	원격
25		(플랫폼종사자)놀이돌봄 입문과정	보육	비대면실시간

\*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의 “훈련과정-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에서 위 표의 훈련과정명으로 검색 가능 (검색이 안되는 경우, 훈련기관에 유선 문의)

- **지원수준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 내 3회 전액 지원, 4회 수강부터는 자부담 10% 적용

##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기업지원과<팀>)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서울청	서울청	서울고용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10층	서울특별시 중구·종로구·동대문구	02-2004-7370, 7372~3, 7377~9, 7394~5, 7339, 7910~1
	서울청	서울서초 고용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43, 5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02-580-4922, 4940, 4972, 4973, 4978, 4979, 4989, 4993
	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 고용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10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02-3468-4703, 4707~4709, 4713~4715, 4732, 4774, 4784, 4787, 4845
	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 고용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17층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송파구·강동구	02-2142-8924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 고용복지+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 8층	서울특별시 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02-2077-3410, 3422, 3473, 6002~5, 6014, 6034, 6047, 6055, 6065
	서울남부지청	서울남부 고용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9층 (코레일유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양천구·강서구	02-2639-2158, 2162, 2187~88, 2413, 2499, 2435, 2152, 2260
	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 고용복지+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60, 2층	서울특별시 중랑구·노원구·강북구·도봉구·성북구	02-2171-1800, 1802, 1803, 1805, 1861, 1863
	서울관악지청	서울관악 고용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27, 대릉85포스트타워 3차 2층	서울특별시 관악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	02-3282-9249, 9349, 9353, 9361, 9366, 9373, 9379, 9384~6, 9388~9, 9394
충부청	충부청	인천 고용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5층	인천광역시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및 옹진군	032-460-4545
	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 고용복지+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4층	인천광역시 부평구·계양구	032-540-5641
	인천북부지청	인천서부 고용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1로 389 에이플러스빌딩 5층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	032-540-2050 032-540-2051~4 032-540-2029
	부천시청	부천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360 부천고용센터 별관 3층	경기도 부천시	032-320-8972~8974, 8927, 032-310-8843, 8852, 8854
	부천시청	김포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9층	경기도 김포시	031-999-0939~ 031-999-0944
	고양지청	고양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9 남정씨티프라자 7차 4층	경기도 고양시·파주시	고용창출: 031-920-3937, 3998, 3997, 3988, 3981, 3976, 3964, 3962, 3957 고용유지, 고용안정: 031-920-3990, 3978, 3967, 3963 청년일자리도약: 031-920-3995, 3928
	의정부지청	의정부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49, 신동아파라디움빌딩 2층	경기도 의정부시·포천시·구리시·남양주시·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강원도 철원군	고용안정: 031-828-0832~5, 0838, 0893, 0975 고용유지: 031-828-0973, 0974, 0976
	경기지청	수원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60 2층	경기도 수원시·용인시·화성시	031-231-7864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성남지청	성남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 로 90번길 32, 4층	경기도 성남시·광주시·하남시 이천시·여주시·양평군	031-739-3177
	안양지청	안양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메세포스빌타워 2층	경기도 안양시·과천시·광명시· 의왕시·군포시	031-463-0762~4, 0767, 3801, 3803, 3805, 3827
	안산지청	안산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 로242 현대해상 안산사옥 3층	경기도 안산시·시흥시	고용안정상담: 031-412-6940~6946, 6948 고용유지상담: 031-412-6645~6647
	평택지청	평택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장당플라자 3층	경기도 평택시·오산시·안성시	031-646-1205
	강원지청	춘천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9, 넥سس프라자빌딩 4층	강원도 춘천시·화천군· 홍천군·양구군·인제군, 경기도 가평군	044-250-1930, 1924
	강릉지청	강릉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176, 3층	강원도 강릉시·동해시	033-610-1990~93
	강릉지청	속초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178, 3층	강원도 속초시·고성·양양군	033-630-1909
	원주지청	원주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383, 한신프라자 3층	강원도 원주시·횡성군	033-769-0960, 0942~3, 0946, 0951, 0954, 0958
	태백지청	태백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태백시 황지로 119	강원도 태백시	033-550-8603, 8645
	태백지청	삼척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14, 현 진빌딩 4층	강원도 삼척시	033-570-1906
	영월출장소	영월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2층	강원도 영월군·정선군·평창군	033-371-6254, 6261
부 산 청	부산청	부산 고용복지+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4층	부산광역시 중구·동구·서구·영도구·남구· 부산진구·연제구·사하구	051-860-1923
	부산동부지청	부산동부 고용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85, 7층	부산광역시 동래구·금정구·수영구· 해운대구·기장군	051-760-7210, 7216, 7220, 7245~7, 7249, 7250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 고용복지+센터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 9, 3층	부산광역시 북구·사상구·강서구	051-330-9952, 9986, 9954~5, 9945, 9970
	창원지청	창원 고용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 미서로 60, 8층	경상남도 창원시·합안군·의령군·창녕군	055-239-0960
	울산지청	울산 고용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38, 9층	울산광역시	052-228-1923~6, 1942
	양산지청	김해 고용복지+센터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 441, 4층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055-330-6444, 6434~6440
	양산지청	양산 고용복지+센터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역로 103, 5층	경상남도 양산시	055-379-2430, 2431, 2422, 2472
	진주지청	진주 고용복지+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563 안성빌딩 7층	경상남도 진주시·사천시·산청군· 하동군·남해군·거창군· 함양군·합천군	055-760-6751
	통영지청	통영 고용복지+센터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 1로 69, 3층	경상남도 통영시·거제시·고성군	055-650-1811~3, 1818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대구청	대구청	대구 고용복지+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2, 7층	대구광역시 중구·수성구·동구·북구 경상북도 경산시·영천시·군위군·청도군	053-667-6006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 고용복지+센터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3, DBS빌딩 7층	대구광역시 남구·서구·달서구	053-605-6460~6, 6477, 6479, 6488, 6567, 6450
	대구서부지청	대구달성 고용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4길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북도 고령군	053-605-9518~9
	대구서부지청	칠곡 고용복지+센터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46, 명성빌딩 4층	경상북도 칠곡군·성주군	054-970-1906~7
	포항지청	포항 고용복지+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	경상북도 포항시·영덕군·울릉군·울진군	054-280-3070, 3132, 3051, 3053
	포항지청	경주 고용복지+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원화로 396, 3층	경상북도 경주시	054-778-2500
	구미지청	구미 고용복지+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백산로 118, 4층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칠곡군(석적읍 중리 국가산업단지)	054-440-3360~4
	영주지청	영주 고용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번영로 88, 2층	경상북도 영주시·봉화군	054-639-1132
	영주지청	문경 고용복지+센터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1길 67, 문경시산림조합건물 4층	경상북도 문경시·상주시	054-559-8231
	안동지청	안동 고용복지+센터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400	경상북도 안동시·예천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	054-851-8062
광주청	광주청	광주 고용복지+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21, 7층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곡성군· 구례군·담양군·장성군	062-609-8500
	광주청	광주광산 고용복지+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154, 2층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라남도 영광군·함평군	062-960-3201~8
	전주지청	전주 고용복지+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3층	전라북도 전주시·무주군·장수군· 진안군·완주군·임실군	063-270-9210
	전주지청	남원 고용복지+센터	전라북도 남원시 향단로 39	전라북도 남원시·순창군	063-630-3915
	전주지청	정읍 고용복지+센터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택지3길 28,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전라북도 정읍시	063-530-7501
	익산지청	익산 고용복지+센터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1	전라북도 익산시	063-840-6523~4, 6507, 6551, 6553
	익산지청	김제 고용복지+센터	전라북도 김제시 화동길 105	전라북도 김제시	063-540-8404, 8405
	군산지청	군산 고용복지+센터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로 62	전라북도 군산시	063-450-0634, 0636~9, 0626, 0683, 0655,
	군산지청	부안 고용복지+센터	전라북도 부안군 번영로 145, 2층	전라북도 부안군·고창군	063-580-0515
	여수지청	순천 고용복지+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충효로 147, 4층	전라남도 순천시·보성군·고흥군	061-720-9164
	여수지청	여수 고용복지+센터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북로 33, 2층	전라남도 여수시	061-650-0155
	여수지청	광양 고용복지+센터	전라남도 광양시 증마로 410, 커뮤니티센터 8층	전라남도 광양시	061-798-1917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목포지청	목포 고용복지+센터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5번 지 4층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신안군· 영암군·진도군	061-280-0541~2, 0564, 0552, 0585
	목포지청	해남 고용복지+센터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중앙 1로 61, 2층	전라남도 강진군·해남군· 완도군·장흥군	061-530-2912, 2913
대전청	대전청	대전 고용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48번 길 48, 2층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금산군	042-480-6000
	대전청	공주 고용복지+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번영1로 46, 스타타워빌딩 4층	충청남도 공주시	041-851-8507
	대전청	논산 고용복지+센터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 번길 14-8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	041-731-8601, 8661
	대전청	세종 고용복지+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터미 널안길 60, 3층	세종특별자치시	044-861-8992~3
	청주지청	청주 고용복지+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 환로 1037, 비와이씨 청주분 평빌딩 7층	충청북도 청주시·진천군·괴산군· 보은군·증평군·옥천군·영동군	043-230-6700
	천안지청	천안 고용복지+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 대로 163, 충남타워 3층	충청남도 천안시·당진시·아산시·예산군	041-620-7400
	충주지청	충주 고용복지+센터	충청북도 충주시 탄금대로 39, 세일빌딩 4층	충청북도 충주시·음성군	043-850-4030, 4032, 4035, 4037
	충주지청	제천 고용복지+센터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441	충청북도 제천시·단양군	043-640-9322 ~9323
	보령지청	보령 고용복지+센터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남로 26, 3층	충청남도 보령시·서천군·부여군· 홍성군·청양군	041-930-6255, 6259, 6243
	서산출장소	서산 고용복지+센터	충청남도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 5층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041-661-5614, 5664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고용복지+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2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064-710-4462, 447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고용복지+센터 서귀포지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 로 186, 제주감귤농협 서귀포 시지점 4층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064-710-4595